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 실시 등〉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07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 실시 .....        | 3  |
| 2. 종업원등의 출원·양도 제한 등 .....      | 6  |
| 3. 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기준 구체화 .....    | 9  |
| 4.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기간 연장 ..... | 12 |
| ※ 참고자료 .....                   | 16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11.
3. 회부연월일 : 2025. 9. 1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0% 이상은 직무발명에 의한 것이며,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승계 및 보상 규정이 미비하여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직무발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 나.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3조제4항 신설).
- 다. 종업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 라. 사용자등이 발명의 경제적 가치, 종업원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 마.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안 제18조제2항).

### Ⅲ. 검토의견

#### 1.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 실시

개정안은 지식재산처장<sup>1)</sup>으로 하여금 「발명진흥법」 제11조제1항<sup>2)</sup>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직무발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용자등<sup>3)</sup>에게 직무발명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제11조의3(직무발명 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직무발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개정안의 기관장 명칭인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수정 필요
- 2) 「발명진흥법」 제11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 3)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개정안은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면서 사용자 등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통계적 조사 대비 직무발명 현황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이 높아질 수 있고, 보상 미이행 또는 불충분한 보상 제공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을 제공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사용자등의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안 제11조의3제2항), ①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sup>4)</sup>, ② 지원시책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자료에 불과한 실태조사를 위해 사용자에게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는 직무발명 현황 등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의 적정성과, ③ 미제출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 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 현황은 기업의 경영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사용자등에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발명진흥법」 제20조의6<sup>5)</sup>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고 이에 ‘직무발명보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sup>6)</sup>가 포함되어 수행 중이므로 직무발명보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임.

- 
- 5) 「발명진흥법」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기업, 대학, 공공연구원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보유 현황, 보상 단계별 보상 실시 비율, 보상금 지급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여 이를 책자로 발간·공개 중임.

## 2. 종업원등의 출원·양도 제한 등

개정안은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여부 확정 전에 종업원등<sup>7)</sup>이 해당 권리를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고,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명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 신설).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 ③<br>(생략)<br><u>&lt;신설&gt;</u> |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 ③<br>(현행과 같음)<br>④ <u>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의 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u> |
| <u>&lt;신설&gt;</u>                                   | <u>제13조의2(손해배상책임) 종업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u>                           |

현행법상 직무발명의 권리가 승계되는 유형은 두가지가 있는데,

(a) 우선 사용자등이 종업원등과 미리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계약  
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7)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사용자등에게 승계되나 다만 직무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종업원등에게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할 수 있고(「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8)),

(b) 그러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발명 완성을 통지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종업원과 협의하거나,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여 승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발명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9)).

개정안과 같이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여부 확정 전에 종업원등의 출원 또는 양도를 제한하면 종업원등의 이중양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승계 여부에 대한 사용자·종업원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8) 「발명진흥법」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9) 「발명진흥법」 제1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사용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직무발명의 권리승계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별개로 현행법의 해석 및 판례<sup>10)</sup>를 통해서 종업원들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타당하고<sup>11)</sup>, 사용자들은 종업원들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발명진흥법」 제13조제2항 후단), 종업원들의 출원·양도를 제한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 승계에 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개정안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고, 직무발명은 종업원의 권리임에도 최소 4개월 동안 사용자의 승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10) “그렇다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위 약정 등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위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종업원 등이 이러한 신임관계에 의한 협력의무에 위배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 등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 77320 판결]

11)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3. 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기준 구체화

개정안은 발명의 경제적 가치, 종업원등의 기여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5조제2항 후단).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생략)                                                                          |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
|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br>-----<br>-----<br>-----, 이 경우 사용자등은 발명의 경제적 가치, 종업원등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 ③ ~ ⑦ (생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sup>12)</sup>, 사용자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12)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다만, 법률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인 “정당한 보상”,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공헌한 정도<sup>13)</sup>”와 같은 용어의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법령상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sup>14)</sup>.

이에 개정안에 따라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보다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발명의 경제적 가치와 종업원등의 기여도를 보다 충실히 고려하는 등 종업원등의 권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지식재산처는 현행법상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협의하면 종업원등에게 불리한 보상규정도 작성할 수 있으므로<sup>15)</sup> 보상 기준을 정할 때 단순히 ‘발명의 경제적 가치’나 ‘종업원의 기여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여건’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경제적 가치’나 ‘종업원의 기여도’

---

13)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직무 발명 보상금 관련 소송의 양상을 보면 보상액에 대한 회사와 발명자 사이의 시각차가 상당하다. 이와 같은 양측의 보상액에 대한 간극이 발생하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주요 원인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의 기준이 모호해 어느 정도가 정당한 보상인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특정 발명에 따라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발명의 승계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한다.” [한경비즈니스, “기술 혁신을 위해 도입했는데... 늘어나는 직무발명보상제 소송, 2022.3.4.]

15)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와 같은 용어가 현행법인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이나 ‘공헌한 정도’에 비해 특별히 더 명확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sup>16)</sup>,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6) 현행법상 기준인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례 등에서 사용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직무발명보상금 = 사용자의 이익\*×종업원의 공헌도×해당 발명자의 기여율**

\* 사용자의 이익 = (자기실시) 직무발명 관련 매출액×직무발명의 기여도×독점권기여율×가  
상실실료율  
(실시계약) 실시료수입×직무발명의 기여도

- **종업원 공헌도**: 직무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제외한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 **해당 발명자의 기여율**: 공동발명인 경우 발명자들 사이에서의 원고 기여율
- **직무발명의 기여도**: 제품에서 해당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 실시료에서 해당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
- **독점권 기여율**: 사용자의 무상통상실시권을 넘어 독점이익(초과이익) 발생에 해당 직무발명이 기여한 정도
- **가상실시료율**: 과거 실시계약의 실시료율, 유사발명에 대한 실시료율, 해당 기술분야의 실시계약 평균치 등 고려

자료: 지식재산처

#### 4. 직무발명심의회위원회 심의 요구 기간 연장

개정안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심의회위원회(이하 “심의회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사용자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제18조제1항제7호17))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생략)                                                                                           |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u>30일</u>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u>30일</u>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② -----<br>----- <u>90일</u> -----<br>-----<br>-----<br>----- <u>90일</u> -----<br>-----. |
| ③ ~ ⑥ (생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17) 「발명진흥법」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현행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 등 심의를 위해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발명진흥법」 제17조18)),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발명진흥법」 제18조).

그런데, 종업원등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유가 발생한 날(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제18조제2항 단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행사 기한을 분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여, 사내 자체 분쟁해결 수단인 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분쟁에 대한 법적·경제적인 판단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8) 「발명진흥법」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다른 2건의 법률안<sup>19)</sup>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연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기간 연장 관련 법률안

| 현행                                                                                                                             | 개정안                                                                                                                                                        | 김동아의원안                                                                                                                                                                         | 권향엽의원안                                                                                                                                                    |
|--------------------------------------------------------------------------------------------------------------------------------|------------------------------------------------------------------------------------------------------------------------------------------------------------|--------------------------------------------------------------------------------------------------------------------------------------------------------------------------------|-----------------------------------------------------------------------------------------------------------------------------------------------------------|
|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생략)                                                                                                  |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u>사유가 발생한 날</u> 부터 <u>30일</u>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u>30일</u>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② -----<br>-----<br>-----<br>-----<br>---- <u>90일</u> -----<br>-----<br>---. -----<br>-----<br>-----<br>-----<br>----- <u>90일</u> -----<br>-----<br>-----. | ② -----<br>-----<br>----- <u>사유</u><br><u>를 안</u> -----<br>---- <u>60일</u> -----<br>-----<br>---. -----<br>-----<br>-----<br>-----<br>---- <u>60일</u> -----<br>-----<br>-----. | ② -----<br>-----<br>-----<br>-----<br>---- <u>60일</u> -----<br>-----<br>---. -----<br>-----<br>-----<br>-----<br>---- <u>60일</u> -----<br>-----<br>-----. |
| ③ ~ ⑥ (생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                                                                                                                                            |

1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9400호,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0503호,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지식재산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요구 가능 기간 확대의 취지는 동의하고, 다만 관련 법률안 2건을 고려하여 기간을 60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김동아의원안과 같이 심의 요구 기산점을 ‘사유를 안 날’로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등의 법적 불확실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예: 180일)의 제척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458 |

참고
기업별 직무발명보상 현황

□ 기업별 직무발명보상 현황(출처: '24년 지식재산활동조사)

| 구분(기업별)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전체   |
|-----------------------|--------------|-------|------|------|------|
| 발명신고/<br>출원/등록<br>보상금 | 평균 보상액(만원)   | 4,350 | 799  | 275  | 541  |
|                       | 평균 지급인원(명)   | 78.8  | 18.2 | 5.1  | 10.3 |
|                       | 평균 지급 권리(건수) | 56.4  | 19.1 | 5.4  | 9.5  |
| 출원유보<br>보상금           | 평균 보상액(만원)   | 724   | 816  | 119  | 350  |
|                       | 평균 지급인원(명)   | 1.9   | 5.6  | 5.3  | 5.2  |
|                       | 평균 지급 권리(건수) | 2.6   | 9.0  | 3.3  | 4.9  |
| 실시/처분<br>보상금          | 평균 보상액(만원)   | 2,128 | 862  | 597  | 786  |
|                       | 평균 지급인원(명)   | 27.8  | 2.6  | 5.9  | 6.8  |
|                       | 평균 지급 권리(건수) | 23.3  | 3.3  | 2.5  | 4.4  |

※ 최근 2년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2건 이상 출원한 기업 중 보상금 지급 응답 기업 기준